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552313, 2019가합51061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전 문

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변론 종결2020. 11. 26.

판결 선고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2,785,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2,849,608원을 610,064,278원¹⁾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785,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는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D에 실행한 대출의 2018. 1. 8.을 기준으로 한 채무원리금은 997,251,280원이다.

1	2015. 11. 19.	4억 원	긴급경영안전자금	2018. 11. (1년 거치, 2년 분할)	4.05% (연 12%)
2	2016. 10. 20.	4억 원	수출금융지원사업	2017. 10. (만료일)	2.72% (연 12%)
3	2017. 6. 1.	3억 원	글로벌진출지원	2022. 6. (2년 거치, 3년 분할)	2.55% (연 12%)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B는 피고와 사이에 2017.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7. 8. 8. 접수 제3324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2019. 2. 2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642,849,608원 중

32,785,33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D은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수입대행을 위해서는 피고가 해외 수출업자에게 D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선결제한 다음 D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아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실제로 D으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 2,612,121,490원을 아직 정산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으로 하여금 사업을 지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와 이후 거래 내역,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등 사후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 하에서는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D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D은 외국에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이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5.경부터는 채무가 약 170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스스로 물품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없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그러자 D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에게 수입대행업무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와 별개로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5억 원(2017. 10.경 18억 원으로 감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7. 5. 8.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8. 8.에야 이루어졌으며, D의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피고가 D과 수입대행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7.경부터 D의 대금결제가 계속 지연되자 피고의 대표이사가 B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적혀 있고, 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나2047453 대여금 사건)에서의 B의 증언 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017. 5. 8.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4) 한편, 피고는 D의 의뢰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자 이후인 2017. 5. 8.경부터 2017. 8. 7.경까지는 미화 2,126,229달러(한화 약 23억 원)의 물품대금 선급금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8. 8. 이후 거래 중단 시까지는 미화 391,828.08달러(한화 약 4억 원)의

물품대금 선급금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5)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 8. 8. 이후의 추가 물품대금 4억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5억 원 및 E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금액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약 4억 원(시가 32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이었고, E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던 점(시가 55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1억 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이 채권최고액에 비하여 작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설령 위 채권최고액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수입대행 거래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인 2017. 9. 14.경 피고의 수입대행 업무가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 쪽에서 결제 지연 등을 이유로 D의 의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D이 추가 주문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수입대행의뢰를 할 수 없었거나, B가 그 무렵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D은 피고의 수입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원자재 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9) 이와 같은 D의 사업 운영 방식, 당시 D으로서 물품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는 약 23억 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는 약 4억 원의 물품대금을 추가로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와 비교할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이 현저히 소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D과 피고의 거래가 피고 측의 사유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D은 피고와의 거래에 따른 사업수익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D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동국

판사김영욱

판사신세아

별지

1)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610,109,270원'은 오기로 보인다.